


전라남도 고시 제2022-227호

#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

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※ 전라남도 고시 제2022-100호는 본 고시로 대체합니다.

2022. 5. 1.

전라남도지사 

## 1. 처분개요

가. 처분대상 :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나. 처분기간 : '22. 5. 2.(화) 0시 ~ 별도 안내시까지

다. 처분내용 : 다음 시설·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

- (착용장소) 실내 전체,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집회·공연 및 스포츠경기(관람)
  -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- (착용종류)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'의약외품'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
  -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마스크(KC마크 부착) 가능
  -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·넥워머·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- (착용방법) 입·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
- (관리의무) 다중이용시설 및 장소의 관리자·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음
  - 관리자 : 시설·장소의 관리 및 총괄 책임자
  - 운영자 : 시설·장소의 설치자 또는 사업자
  - 이용자 : 시설 및 장소 등에 출입·방문한 모든 자(관리자, 운영자, 종사자 포함)

<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>

- ① 발열,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
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\*인 경우  
\* 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 호흡기 질환자, 미접종자 등
-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\*을 이용하거나,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
\* 스포츠 등 경기(관람)장(50인 미만)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체육시설(겨울 스포츠시설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(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)
-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
-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(15분 이상 등)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
- 함성·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

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## 2. 처분 위반 시 조치사항

### 가. 과태료 부과

- (근 거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
- (부과권자) 시장·군수
- (부과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  
- (위반당사자) 횡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
- (관리·운영자) 위반횡수에 따라 차등 부과(1차 50만원, 2차 100만원, 3차이상 200만원 이하)
-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 
- (예외자)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
- (예외상황)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

### 나. 손해배상 청구

- 위 처분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
- (근 거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2호의4

### 다.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

-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-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

# 행정명령서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: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나. 처분기간 : '22. 5. 2.(화) 0시 ~ 별도 안내시까지

다. 처분내용 : 다음 시설·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

- (착용장소) 실내 전체,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집회·공연 및 스포츠경기(관람)
  -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- (착용종류)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'의약외품'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
  -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마스크, 일회용마스크, 전자식마스크(KC마크 부착) 가능
  -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·넥워머·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- (착용방법) 입·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
- (관리의무) 다중이용시설 및 장소의 관리자·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음
  - 관리자 : 시설·장소의 관리 및 총괄 책임자
  - 운영자 : 시설·장소의 설치자 또는 사업자
  - 이용자 : 시설 및 장소 등에 출입·방문한 모든 자(관리자, 운영자, 종사자 포함)

## <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>

- ① 발열,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
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\*인 경우
  - \* 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 호흡기 질환자, 미접종자 등
-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\*을 이용하거나,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
  - \* 스포츠 등 경기(관람)장(50인 미만)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체육시설(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(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)
-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  -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(15분 이상 등)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  - 함성·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

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2.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2항, 제4항,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### 가. 과태료 부과

- (근 거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
- (부과권자) 시장·군수
- (부 과 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
  - (위반당사자) 횡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
  - (관리·운영자) 위반 횡수에 따라 차등 부과
    - 1차 위반 50만원, 2차 위반 100만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이하
-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
  - (예 외 자)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
  - (예외상황)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

### 나. 손해배상 청구

- 위 처분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 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
- (근 거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2호의4

### 다.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

-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-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

2022년 5월 1일

전라남도지사



## 붙임 1 과태료 금액

### ① 대상별 과태료 금액

-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  - 1차 위반 50만원, 2차 위반 100만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원

### ②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사항

- 법 시행령 [별표3]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
- 또한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

### ③ 상황별 과태료 부과(1차 위반 시 예시)

순번	위반 내용	행정명령	운영자 (또는 관리자)	이용자	시설예시
1	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·관리 소홀	·마스크 착용 명령(제2호의4) ·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(제2호의2)	과태료 50만원	과태료 10만원	카페
2	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·관리 적합	·마스크 착용 명령(제2호의4) ·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(제2호의2)	과태료 부과 없음	과태료 10만원	PC방
3	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	·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 명령(제2호의3)	-	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	대중교통

## 붙임 2

##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### ○ (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)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

-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- \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-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-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### ○ 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 세면, 음식 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

-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
-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
-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-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-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-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-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-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-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